

간접 냉각수

Q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간접 폐냉각수(저압 보일러, 공정이용)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수라인으로 연결하여 공단폐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졌을 때 법적 규제가 따르는지요? 또한, 우수관으로 연결하여 배출 될 때는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궁금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 싶이 제품에 직접 적용 되는 냉각수가 아니라 공정상 간접적으로 이용되는 냉각수입니다.

A 수질환경보전법상 간접냉각수는 폐수로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동 냉각수의 오염도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별표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특별한 규제규정은 없음. 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처리하는 폐수공동처리구역 내 배출업체로서 간접폐냉각수의 농도가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52조(별표11)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내인 경우에는 동 냉각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도록 하여야 함.

혼합폐기물 처리

Q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소각장 시설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소각 목적으로 혼합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자기 회사에서 소각하지 않고 타회사에 위탁하여 소각할 수 있는지요?

A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2 제3호 가목 규정에 의거 위탁 받은 폐기물을 위탁 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됩니다.

페스레트에 대한 처리

Q 폐기물처리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개요 : 지장률철거공사(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해당하는 건설공사)

질의 1) 건축물 제거 시 스레트 등 고형화 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되는바, 건축물 해체 · 제거작업 중 스레트가 조각으로 파손된 경우 지정폐기물로 간주해야하는지, 아니면 조각이 낫더라도 고형화 되어 있고 비산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질의 2) 지장률 철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건축물 철거 중 발생하는 고형화 된 폐스레트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분류되는지 궁금하며 만일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면 관리형매립시설에 매립 시 매립작업 중 폐스레트가 파손된 경우 이를 지정폐기물로 다시 간주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지정폐기물의 종류 중 폐석면에 대하여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 방진마스크 · 작업복 등이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석면의 제거작업이란 석면을 함유한 스레트도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4) 건축물철거 시 발생되는 폐금속류에 대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득한 업체 또는 고물처리업체에 매각처리 가능여부 및 만일 그러치 못하다면 그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A 건축물의 해체 · 제거 작업 중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스레트 조각의 경우 수집 · 운반 및 보관 등 취급과정에서 석면분진이 비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됩니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축폐기물이 아님) 국내에서 생산된 스레트의 경우 약 10%의 백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석면의 제거작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석면이 함유(1%이상)된 건축물의 해체 · 제거허가를 받아 행하는 일련의 작업과정으로 스레트의 해체 · 철거작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폐금속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악취 방지시설

Q 당사는 사업장 폐기를 처리업체로서 2기의 소각시설과 1개의 일반폐기물(폐합성수지) 보관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금번 악취 방지법에 근거하여 악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신고를 득하였으며, 그중 일반폐기물 보관시설은 밀폐하는 것으로 허가를 득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세의 변경으로 소각시설 1기의 방지시설을 전면 교체하게 되었고, 소각시설 1기의 방지시설 전면교체 공사로 일반폐기물을 보관시설의 일부를 밀폐할 수 없어 일반폐기물을 보관시설의 완전 밀폐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각로 방지시설 전면교체 공사의 공사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악취 방지시설 미설치로 인한 행정 처분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소각시설 방지시설 전면교체 완료 후 일반폐기물을 보관시설 밀폐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어떠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악취방지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악취관리 지역을 지정·고시할 당시 당해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고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고, 그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1) 귀 사의 경우 일반폐기물보관실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하여 조치하기로 한 밀폐를 2006년 5월 15일까지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 제30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으며, 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악취배출시설을 가동할 경우 같은법 제30조 제1항 1제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악취방지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질의 2) 악취방지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기가 어렵습니다.

질의 3) '답변 1' 참조

방지시설운영일지 작성

Q 사정상 당분간 배출공정을 외주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미가동 상태가 되는데, 미가동 하면서도 배출 및 방지시설 일지를 매일같이 기록 관리 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A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일지는 매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미가동의 경우 미가동했다고 기재를 해야, 가동하고도 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와 구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미가동하는 경우에는 한 장의 일지에 이 사실(기간 등)을 기재하면 매일 작성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폐수처리업·등록

Q 제44조(폐수처리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당사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폐수 및 식품폐수 등을 수탁하여 폐수를 이용, 암모니아 수를 제조, 생산하려 합니다. 이때 상기 폐수처리업 2가지 업종 중 어느 업종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요?

A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44조제2호 규정에 의한 폐수재이용업은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 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질의응답

따라서, 산업폐수 및 식품폐수 등을 수탁하여 암모니아수를 제조·생산할 경우에는 폐수재이용업에 해당됩니다.

폐수방지시설업

Q 대기환경보전법을 보면 대기배출시설을 설계시공 할 경우 방지시설 설계시공업을 등록한자로 신고 또는 설치하게 되었는데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보면 구비서류상에 방지시설업 등록증을 첨부하게 되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와 시공은 방지시설업을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스스로 하여도 상관이 없는지요?

A 수질환경보전법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계·시공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신청 시 작성요령에 오염물질을 자체처리 할 경우, 방지시설설치내역서와 도면을 작성하고, 도면에는 방지시설업 등록사항 및 설계자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배출시설

Q 저희 회사는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축산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은 용량 1000m³/d 이하의 오수처리시설들인데, 모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용되는 악취의 종류와 기준은 무엇인지, 기준에 만족이 안 될 경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네요.

A 질의 1) 2005년 12월 29일 환경부령 제187호로 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에 의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오수처리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며(단, 단독정화조는 오수처리시설에서 제외됨) 악취방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악취관리지역 안에서만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 2) 또한 오수처리시설에 적용되는 악취의 종류와 기준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별표 3에서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으며 악취관리지역에 관계없이 오수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동법 제7조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악취관련

Q 환경부 시달 사항중인 '05. 12. 31까지 설치신고 대상 배출시설('06. 1. 1적용 시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당사의 업종은 표준산업분류 2439 그 외 기타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는데 설치신고 유예조치 대상여부란에 '05. 12. 31까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유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06. 1. 1일부터 적용을 받으므로 관할청에 신고하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환경부령 제170호로 제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2005. 2. 7공포, 2005. 2. 10시행)의 별표 2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과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악취배출시설을 구분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2439 그 외 기타화학제품제조사설은 2006년 1월 1일부터는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되어 있어 신고·폐쇄 등의 행정적인 사무로 인한 산업체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05년 12월 31일까지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였습니다. 참고로 2005년 12월 29일 한국표준산업분류 중심으로 분류된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중심으로 규모 등을 설정하여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의 제2호가 개정되었는 바,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동 개정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출시설 신고

Q 안산 반월공단내 업체입니다. 작년 악취배출대상시설(의약제제품제조시설)이 있어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하였습니다. 올해 배출시설(의약제제품제조시설:공정부분이 늘어나)과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려 합니다. 신고서 배출시설명이 증설되지 않기 때문에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아님 배출시설명이 같지만 새로이 증설이 되기 때문에 악취배출시설(신규)로 신고대상이 되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A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악취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대상은 ①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동종·동일규모의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 ②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③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만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방지시설 선정여부

Q 저희 업체는 목재가공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조관련 9.제재 및 목재가공연시설 가.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연시설중 일명 물더기가 있습니다. 본 설비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방지시설로는 원심력집진시설(일명 CYCLONE)로 설치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관할행정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결과 원심력집진시설은 처리효율이 비교적 낮으므로 여과집진시설(BAG FILTER)로 설치 할 경우 설치신고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일 동종의 시설에서 정상작업시 배출구농도(먼지)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120\text{mg}/\text{m}^3$)에 못 미치는 $79\text{mg}/\text{m}^3$ 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가능한 시설임에도 처리효율이 다소 떨어진다는 이유로 고가의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배출허용기준이 있으므로 설치 후 가동개시신고를 거쳐 관할측정기관에서 실시하는 배출구에서의 측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리라 보여 집니다.

A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관련으로 방지시설의 용량, 효율을 검토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오염물질최

대부하량, 안전을 등을 감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허가권자의 고유영역입니다. 따라서 제시내용의 방지시설만을 갖고 배출허용기준 등을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관련입증자료를 갖고 허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Q 대기환경보전법상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분류에 12.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에 건조시설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 1) 당사는 배합사료가 아닌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당사는 배합사료 제조시설이 아니므로 당사의 건조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 2) 건조시설에 열공급시설인 보일러는 공통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

질의 3) 당사의 분쇄시설의 배출계수는 국립환경연구원 자료에서도 미국 EPA의 fish byproduct 제조공정의 자료에서도 먼지의 배출계수를 구할 수 없으니,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여부

A 질의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12호 가목에서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3 이상의 건조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시설은 단백질 및 배합사료 제조시설에만 적용됩니다.

단, 미사료가 단백질 및 배합사료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료관리법을 운영하는 주무부서(농림부)에 문의해야 상세하게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 2) 가스 또는 경질유를 제외한 B-C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므로 설치신고 대상입니다.

질의 3) 질문내용의 배출계수를 구할 수 없는 경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4-13호)에 따라 이론적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K**